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
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(이하 활성화구역)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,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,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

3. 주요내용

가. “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(안 제2조)” 등

-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를 100개에서 팔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00개”를 “100개(단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0개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) ①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<u>100개</u> 를 말한다.	제2조(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개</u> (단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<u>50개</u>)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87